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5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구자근 · 최수진 · 김성원
강승규 · 김선교 · 강대식
최은석 · 김도읍 · 강선영
조지연 · 정동만 · 김승수
박덕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3條(放送廣告등) ①・② (생략) ③ <u>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u>	第73條(放送廣告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u> 1. <u>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u> 2.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u>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